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00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김용민 · 박지원 · 최혁진
장경태 · 박은정 · 이성윤
서영교 · 김기표 · 전용기
박균택 · 전현희 · 김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함. 그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68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 확정된 판결”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에 관한 특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생략)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u>60세</u> 로 한다.	⑦ ----- ----- ---- <u>65세</u> -----.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68조(청구 사유) ① <u>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u>	제68조(청구 사유) ① <u>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 확정된 판결-----헌법재판소-----</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